

1.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u>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로부터 그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u>를 말한다. <p>3~7.(생략)</p> <p>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무형문화재의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u>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p>② <u>보유자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u>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예능의 <u>보유자가</u>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u>보유자로부터</u>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수교육"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u>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전수자"란 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의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로부터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을 교육 받은 자</u>를 말한다. <p>3~7.(현행과 동일)</p> <p>제3조(이수심사 대상) ①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에 따른 이수심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무형문화재의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u>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은 전수자 2. 법 제30조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에서의 전수교육을 수료한 전수자 3.(신설) <u>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이수자로서</u>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전수자 <p>② <u>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해제로 전수교육이 중단되었을 때(개인종목에 한함)</u> 동일 종목 내 동일 기능·예능의 <u>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u> 이전 전수교육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해당 <u>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u>의 전수교육의 합이 3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p>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3. (생략)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2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생략)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2.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5.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이수심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동일)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한다.

1.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사·전수교육학교로부터 신청된 종목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이수심사 대상 종목 선정

2~3. (현행과 동일)

제11조(이수심사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수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사, 전수교육학교를 대상으로 이수심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동일)

제12조(이수심사 평가자) ① (현행과 동일)

② 평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1. 법 제9조 및 제31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시간강사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기타 이수심사에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생략)

②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발급받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보유자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결과 이수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이수심사의 신청) ① (현행과 동일)

②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이수심사 신청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부터 발급받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이수심사 신청자가 해당 서식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해제된 경우(개인종목에 한함)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별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동일)

⑥ (현행과 동일)

⑦ (현행과 동일)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심사 결과 합격한 전수자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예능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첨 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의 분야를 적용할 수 있다.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우편주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				
전수교육기간 (협업포털등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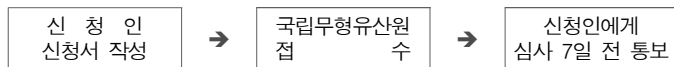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서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과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사람에 한함
2. 전수교육 협업포털 등록기간은 보유자·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이는 보유자·보유단체에서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진 (3.5*4.5)	성명 (한자)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별)	(남/여)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우편주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				
전수교육기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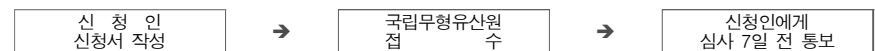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수심사를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과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사람,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에 한함
2. 전수교육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기간은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이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게 확인하여야 함

첨부서류

◦ 신청자 이력서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보유자·보유단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종목명칭		<u>보유자· 보유단체</u>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간	~ 년 월 일
협업포털 전수교육 실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u>보유자(보유단체)</u>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p>			
<p>※유의사항</p> <p>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문화재 협업포털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을 확인한 뒤,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p>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종목명칭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u>	
전수교육 입문일	년 월 일	전수교육 기간	~ 년 월 일
통합플랫폼 전수교육 실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u>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u>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p>			
<p>※유의사항</p> <p>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을 확인한 뒤, <u>보유자·보유단체·전승교육사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u></p> <p>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이수자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응시할 때는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p> <p>3. 2의 경우 국립무형유산원은 해당 시·도에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도에서 이수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p>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전수교육학교)

성 명		생년월 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종목명칭		전수교 육학교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	이수학점: 이수과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총장(학교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전수교육과정 수료 사실을 확인한 뒤, 총장(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전수교육학교)

성 명		생년월 일 (성별)	(남,여)
주 소 (연락처)	(우편주소) ()		
종목명칭		전수교 육학교	
전수교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	이수학점: 이수과목: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총장(학교장)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유의사항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전수교육과정 수료 사실을 확인한 뒤, 총장(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2.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① (생략)</p> <p>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u>보유자 및 보유단체가</u>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p> <p>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u>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p> <p>제4조(공개 주관) ① (생략)</p> <p>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u>전수교육조교와</u>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u>전수교육조교</u>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전수교육조교</u>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p>② ~④ (생략)</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동일)</p> <p>② 이 규정에서 "전수교육"이란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u>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련의 학습 과정을 말한다.</p> <p>③ 이 규정에서 "전승활동"이란 <u>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u>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p> <p>제4조(공개 주관) ① (현행과 동일)</p> <p>② 보유자등은 공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u>전승교육사와</u> 이수자·전수생을 그 공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공개 방법) ①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공개 주체: 보유자등이 직접 참여하여 실연하는 것으로 하고, 보유자등은 공개 과정 중 일부를 보유자등의 지도 아래 <u>전승교육사</u> 및 이수자로 하여금 실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전승교육사</u> 및 이수자가 실연하는 비율은 공개 과정의 50%를 넘을 수 없다. <p>② ~④ (현행과 동일)</p>

<p>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u>보유자등은</u>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u>보유자등은</u>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u>보유자등은</u> 규칙 제16조에 따라 <u>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u>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조(전수교육 이행) ①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u>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한 전수교육 계획서에 따라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u>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출결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p>③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u> 규칙 제16조에 따라 <u>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전수교육 계획서와 전년도 전수교육실적보고서를</u>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u>보유자등은</u>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u>전자문서로</u> 제출 할 수 있다.</p>	<p>제14조(전수교육 증빙 등의 전자문서)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u> 전수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실적 보고 등을 <u>국립무형유산원이 운영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로</u>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생략)</p> <p>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u>신규 보유자등으로</u>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p>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u>보유자등에게</u>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6조(전수교육 점검) ① (현행과 동일)</p> <p>② 전수교육 점검 대상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개 점검 결과 실연내용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평가된 경우 2. <u>신규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u> 인정된 경우 3.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4.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p>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점검 대상이 확정되면 이를 대상 <u>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u> 통보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분기별 1회씩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주소)	()			
출 연 자	보 유 자			
	<u>전수교육조교</u>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W)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m²)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 사 명				
공개날짜				
공개장소(주소)	()			
출 연 자	보 유 자			
	<u>전승교육사</u>			
	이 수 자			
	전 수 생			
소요예산	금 원(W)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m²)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사명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u>전수교육조교</u>					
	이수자					
	전수생					
집행금액	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m²)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국가무형문화재 공개결과보고서

지정번호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		명칭			
행사명						
공개날짜			공개장소			
출연자	보유자					
	<u>전승교육사</u>					
	이수자					
	전수생					
집행금액	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체부담	기타
관람인원	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유자(보유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백상지(80g/m²)

[별지 제5호서식]

※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수교 육조교					
이수자					

[별지 제5호서식]

※ 별첨 1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성별	기·예능	참여 여부 (○,×)	공개의 역할 및 특기사항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3.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u>을 말한다.</p> <p>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u>전수교육조교</u>, 이수자, 우수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5~8. (생략)</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동일)</p> <p>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u>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u>을 말한다.</p> <p>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u>전승교육사</u>, 이수자, 우수 이수자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p> <p>5~8. (현행과 동일)</p>